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76

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이성윤·윤준병·추미애

민형배 · 김윤덕 · 서영석

장종태 · 김승원 · 황운하

서영교 · 황정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. 이 경우 임 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.

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인(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)은 임명권자가 없음. 이들에 관한 탄 핵소추가 의결되면,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.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3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2항 중 "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"를 "정지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소추된 사람은 사직할 수 없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핵소추된 사람의 사직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탄핵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	제134조(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
과) ① (생 략)	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	②
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	
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	<u>정지된다</u> . <u>이 경우 소추된</u>
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	사람은 사직할 수 없고 임명권
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	자는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
<u> 없다</u> . <u><후단 신설></u>	없다.